

공시송달공고

벌과금 강제집행(체납처분)을 위한 강제집행 예고장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,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4. 18.

전주지방검찰청

● 공시송달 내역

1. 제목 : 강제집행 예고장

2. 공고기간 : 2024. 4. 19. ~ 2024. 5. 3. (14일간)

3. 송달내역 : 아래 공시송달목록 참조

4. 문의사항 : 전주지방검찰 집행과 재산형집행계
(T. 063-259-4585)

공시송달목록

	구분	대상자	징수연도	금액(원)	반송사유	징제번호
1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이재춘	2024	7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568
2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고순재	2024	1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20
3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박재호	2024	1,5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24
4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이은광	2024	5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27
5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유복남	2024	2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30
6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조혜진	2024	7,9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32
7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김원준	2024	1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1837